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략적 검토 - 사람, 돈, 땅을 중심으로 -

오영균 /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책임연구원

박충훈 /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제국 /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I. 결론

II. 지방분권의 의의

III. 지방분권의 내용 1- 사람 (오영균)

지방분권의 내용 2- 돈 (박충훈)

지방분권의 내용 3- 땅 (김제국)

I

결론

- 분권은 균형발전과 함께 참여정부의 중요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정부측면에서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야 할 입장임.
- 경기도가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을 지지하고 분권화노력에 적극 협력하며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도차원에서 제도적 준비를 갖추는 것은

첫째, 지방자치의 실효화에 기여하고 둘째, 지방의 일치된 목소리를 대변하며 셋째, 반분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소망스러움. 다만, 구체적인 협력과 대응의 수준과 내용은 9월말로 예정된 분권로드맵의 실천과제의 발표 및 진행사항을 보고 결정할 사안임.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취할 입장을 제안함

1

분권은 참여정부가 선점한 이슈로서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명분과 실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논리임. 따라서 단순히 분권을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큼. 따라서 전체적인 분권로드맵의 추진에 있어 사람, 돈, 땅에 대한 분권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토록 촉구함으로써 참여정부로 하여금 실제적 분권의지를 증명하게 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권추진의 형식화 또는 유명무실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큼.

2

또한 분권원리로서 채택된 보충성의 원칙대로 기초자치단체중심으로 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광역행정서비스 등의 대도시행정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경제살리기와 국가경쟁력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구상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큼.

II

지방분권의 의의

1. 지방분권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과 재원이 ‘이양’되는 현상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것

2) 지방분권과 사람

- 지방분권화 핵심 요소인 사람·돈·땅 가운데 사람에 해당하는 조직·인사의 문제는 ① 중앙정부로부터의 조직권·인사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문제이고, 이는 또한 ② 지방정부의 협력적 통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③ 법적·제도적인 권한이양에 따른 정부간 관계 재정립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

2. 지방분권의 논리

1) 일반적 논거 및 기대효과

- 국가권력의 지방이양에 따른 효과적인 민주주의 실천 가능
-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체화된 문제들을 보다 적합하게 해결함으로써 지방정부에 의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
- 국가보다 밀착된 상황에서 지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
- 적정규모의 지방정부에 의한 국가정치의 능률성에 기여
-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지방주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 단축
- 대민서비스 개선기회 확충

▶ 궁극적인 가치는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역량 창출

2)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 비전 및 방향
 - 비전 : 지방활력을 통한 국가발전 이룩
 - 방향 : 중앙-지방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재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 확충 및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정부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 정치적 모토 : 자율과 참여
 -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줄 것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여
분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방분권화 의지 표명

- 중앙정부 지방분권추진의 3대 원칙
 - 첫째, 선 분권-후 보완의 원칙 : 조속한 분권 천명
 - 둘째, 보충성의 원칙 : 정부기능을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부터 배분
 - 셋째, 포괄성의 원칙 : 개별사무나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
 - ※ 기타 - 민간자율의 원칙 : 국가 관여 최소화, 민간
참여 최대화

Ⅲ

지방분권의 내용 1- 사람 (오영균)

- 1995년 이후,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직·인사 권은 일부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집권적 시각과 통제범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것은 지방분권에 대하여 정치적 이슈화는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노력 측면에서 구체성·실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상호협력관계를 이루지 못하였음.
- 상대적으로 현 참여정부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지방분권화 개혁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음.

1. 자치조직권의 제약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는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산정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책정하도록 제한되고 있음.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신속성결여가 지방정부가 주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있음.

2. 자치인사권의 제약

- 자치인사권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하위법령에 근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써 규정.
-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자치인사권은 감축해야 할 분야와 강화될 분야에 대한 적절한 자율조치를 제약하고 있음.

3. 경기도의 현황

1) 인력 현황

- 경기도 행정수요는 사업기능별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 공무원수는 타 광역단체보다 현저하게 적어서 경기도를 100으로 하였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서울은 416.3명, 부산 156.1명, 대구 120명, 인천 145.6명임.

2) 조직 현황

- 기구 설치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인원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해,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에 대한 원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대단위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구규모 및 재정규모 등에서 지자체 중 최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간부급 관리자의 경우 서울시 혹은 부산시 등의 지자체에 비교하여 상대적인 하향 직급을 부여받고 있는 등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정원 승인권을 연차적으로 지방이양하는 단계적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지방조직관리의 기본틀을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제적 수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과제임.

4.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대응 전략

1) 법적·제도적 정립

(1)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원적 규제장치 단일화

-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은 법령과 명령에 의한 이원적 통제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부령에 의한 세부화된 통제방식보다는 『대통령령』에 의한 규제 단일화, 자치조례에 의한 포괄적 권한 위임 필요

(2) 지방정부조직의 설치조건 및 요건 다양화

- 현 기구정원관리규정의 기준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야 함.

(3) 지방정부 정원 및 인사관리규정 최소화

- 기구정원규정에 의한 획일적 명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상당부문 침해받음.
- 따라서 법령에 최소규정 근거를 두고 지방정부 조례를 통한 세부화된 기준을 신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정부간 다각적·협력적 인사교류시스템 구축

- 중앙-광역, 광역-기초 등 정부상호간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자치역량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유지 및 정부상호간 다양한 의견교류

2) 정부간 관계 정립 - 협력적 정부관계 정립

- 지방분권의 궁극적 의미는 수직적·종속적 정부간 관계를 수평적·대등적 정부관계로 전환하는 것임.
- 따라서 권한이동에 따른 책임성 확보, 지식과 경험의 공유,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능력향상과 관련한 관계 재정립 필요

Ⅲ

지방분권의 내용 2 - 돈 (박충훈)

1. 재정분권의 개념

-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말함. 이때, 이양되는 재정책임의 유형으로는 재원확보의 자주성과 재정운영의 자주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재원확보의 자주성에는 다시 과세자주권, 기채자주권, 자율적 요금결정권 등이 포함되며, 재정운영의 자주성에는 예산편성, 집행, 재산관리 및 수입지출의 회계관리 측면에서의 자주성이 포함됨.

2. 재정분권의 현황

1) 전국현황

- 지방재정은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과 같은 의존재원으로 구성됨.
-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세목, 세율, 과세표준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 위주의 세목편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국세대 지방세 비율은 75:25(2002년 결산기준)

구 분	2002년도 결산액(백만원)	비 율
국 세 ^{주)}	94,285,809	75%
지방세	31,535,096	25%

주) 국세는 일반회계의 내국세, 교통세, 관세, 방위세의 합계

- 재정자립도 50%가 안되는 자치단체는 250개 자치단체 중 87%가 해당됨.

구 분	합 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250	100	16	77	88	69
30% 미만	136	54	7	32	82	15
30-50%미만	83	33	1	30	6	46
50-70%미만	20	8	3	14	0	3
70%이상	11	5	5	1	0	5

주) 2004년 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8100/budget/jipyo/Jipyo_Jarip_02.jsp)

- 250개 자치단체 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64%인 159개에 달하고 있음.

구 분	전국	시·도	시	군	자치구
자체수입	51(21%)	0	5(6%)	41(47%)	5(7%)
지방세	159(64%)	0	23(30%)	78(89%)	58(84%)

주) 2004년 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lofin.mogaha.go.kr:8100/budget/jipyo/Jipyo_Sooip_01.jsp)

2) 경기도 현황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는 시·군은 전체의 84%인 26개 시·군임.
- 경기도내 시군 중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3개임.

구 분	합 계	구성비	시	군
합계	31	100	27	4
30% 미만	5	16	2	3
30-50%미만	16	52	15	1
50-70%미만	9	29	9	0
70%이상	1	3	1	0

주) 2004년 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8100/budget/jipyo/Jipyo_Jarip_03.jsp)

3. 재정분권 촉진을 위한 대응 전략

1) 재정분권의 방향

- 재정분권의 방향은 재원확보의 자주성과 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2) 재원확보의 자주성 확보 방향

- 재원확보의 자주성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직적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과도한 중앙재정규모(국세)의 축소와 이를 통한 지방재정규모(지방세)의 확대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의 규모를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세목결정권, 세율결정권, 과세표준 조정권 등)으로 나아가야 함.
 - 수평적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지역간 불균형분포를 보이고 있는 현행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재원분포가 균등한 세원으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분포가 균등한 세원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재구성하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3) 재정운영의 자주성 확보 방향

- 재정운영의 자주성은 예산편성, 집행, 재산관리 및 수입 지출의 회계관리 측면에서의 자주성을 의미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통제를 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통제되고 있으며, 예산과목의 설정과 구분도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용도가 정해져 내려오는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제약받고 있음.
 -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 확보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각종 보조금의 형태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를 완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되, 재정분석진단제도의 정착과 환류기능 강화,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선, 시민단체 참여의 활성화 등 주민과 지역의 통제를 요소로 하는 외부통제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Ⅲ

지방분권의 내용 3 - 땅 (김제국)

- WTO체제가 성립된 후, 세계경제는 도시와 지역간 경쟁이 국가간 경쟁을 대체하였음. 이에 따라 1980년대 서구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시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도시계획분야에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음
- 국토계획이라는 중앙집권적 도시계획체계는 그 동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전제로 한 근대적 산업경제체제 하에서는 유효하였으나, 지식과 유연한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활을 건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구조 속에서 더 이상 한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
- 따라서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유연적인 토지이용계획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어느 국가가 더 유연하고 분권적인 도시계획제도를 갖추고 있느냐가 도시와 지역,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음
-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제도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세계경제체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중앙집권적인 도시계획제도와 지방정부의 계획역량의 부족으로 90년대 우리 사회의 이슈를 점하였던 국토 난개발의 원인으로 작용

**1. 중앙집권적
국토도시계획
체계**

-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억제 정책 등의 명분으로 지방정부의 계획고권을 제약하고 있음. 법률상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침으로 이들 계획의 내용과 형식까지 통제
- 또한, 광역지방정부가 승인하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일정규모(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승인권뿐만 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한 통제권까지 쥐고 있어 사실상 토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집권적 체계를 유지

**2. 지방정부
계획고권의
위험적 제약**

-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 학교, 도로 등 일체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권까지 중앙정부가 갖고 있음. 특히, 중앙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경계확정과 관련하여 최소 400㎡ 규모의 조정에 대해서조차 심의하며 통제

**3. 지방정부
계획역량
부재의
고착과
국토 난개발**

- 1910년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도 1990년대 우리가 겪었던 국토 난개발 문제를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분권의 정치체제 속에서 각 지방정부는 전문인력의 확보 등 계획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건설부와 내무부간의 지방정부 도시계획에 대한 주도권 확보갈등과정에서 제도화되었고, 지난 20여년간 『택지개발촉진법』 등 중앙정부주도의 도시개발제도를 통해 용도지역지정의 행정적 수단으로 전락하여 국토 난개발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4. 국토계획법의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허구성

- 중앙정부는 1990년대의 국토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기본계획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2003년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음. 이 법을 통해 세계 주요국가들에서 활용되고 있던 도시 성장관리수법(토지적성평가제,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기반 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이 도입되었음.
- 그러나 국토계획법은 이들 도시성장관리기법에 대한 광역지방정부(도)의 권한을 일체 권한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이들 도시성장관리수단을 관리·통제하도록 하여 광역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성장관리의 길을 차단하였음.

5. 경기도 현황

1) 시·군 도시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조정역할 미흡

- 경기도는 타 광역지방정부와 달리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에 의해 『국토기본법』상 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도 종합계획의 수립이 유보되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규제 하에 중소규모 난개발에 무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자체적으로 비법정의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나, 『국토계획법』상 각 시·군이 운용하게 될 도시성장관리수단에 대해 어떻게 종합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개발위주의 계획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2) 중앙정부주도의 택지개발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무력화

- 2004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포천,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수립을 완료하였음. 그러나 1984년 동두천시가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중앙정부주도의 택지개발에 의해 평균 6년에 한번 꼴로 재수립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중앙정부주도의 택지개발 이외에 지역정치의 압력에 의해 지대추구를 위한 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이 빈번하게 재수립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한 계획권한 박탈

-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으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일부가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높거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설정된 사례를 들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재조정하거나 집단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러한 경기도의 합리적인 요구에 반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해 중앙정부 스스로 제정한 지침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고밀도 국민임대주택단지(12개소, 462만평, 국민임대주택 48,400가구)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음.

6. 지방정부의 계획역량 강화와 대안 제시

- 중앙정부(지방분권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도의 조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지방분권 추진일정을 늦추고 있음.
- 국토 난개발은 사실상 도시개발 및 정비에서 재원이 부족한 정부가 개발이익을 동원하기 위해 제도적 준비를 하지 않은 가운데 토지이용제도를 무분별하게 완화해온 데 보다 큰 원인이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자체의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토지이용제도의 문제점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하며, 동시에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도시계획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전환과 비전문성임.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확충과 시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 및 인적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 도시계획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앙정부는 토지제도의 원칙과 도시계획의 방향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운용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와 지역에서 비롯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정주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도시계획운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정부의 계획역량이 낮은 것은 권한이 없었기 때문임.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도시계획사가 보여주듯이 도시계획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행착오 과정에서 계획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